

「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# 심 사 보 고 서

## 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9년 3월 20일, 이주웅 의원 발의
- 회부일자 : 2019년 3월 25일 회부
- 상정일자 : 제245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 
(2019년 3월 25일 상정·의결)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이주웅 의원)

### 가.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법 제33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3조, 제34조에 의거하여 평창군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평창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어 통보된 지급기준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내용

가.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수정(안 제3조)

1) 2019년 : 월 2,220,000원

2) 2020년 ~ 2022년

· 전년도 월정수당 + (전년도 월정수당 ×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)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최순철)

- 본 조례안은 평창군의회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2019년 3월 13일 제6차 평창군의정비심의회에서 결정된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,
- 월 1,541,000원이었던 월정수당을 2019년부터 2,220,000원으로 하고,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인상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.

###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### 5. 토론요지 : 생략

### 6. 심사결과 : 수정의결

□ 수정의결 내역 : 안 제3조 제1항제2호의 [별표 2]

2019년 월2,220,000원을 월2,170,000원으로 수정함.

### 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**【붙임】**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평창군 조례 제 호

##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(지급기준) 제1항제2호의 [별표 2]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[별표 2]

월정수당 지급기준(제3조제1항 관련)

연도	월 정 수 당
2019년	월2,170,000원
2020년	2019년 월정수당 + (2019년 월정수당 × 2019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율)
2021년	2020년 월정수당 + (2020년 월정수당 × 2020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율)
2022년	2021년 월정수당 + (2021년 월정수당 × 2021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율)